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-154호

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42 일원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09월 25일

강 남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42 일원
4. 정비구역의 면적 : 11,042.20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정우석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42 (도곡삼호아파트 2동 지하 1층)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8. 사업시행인가일 : 2020. 09. 16.
9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최고높이(m)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 수
10,484.20	24.72	299.85	48,816.97	51.6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지하3층 ~ 지상18층

10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공급구분	주택의 형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
				60㎡이하	60~85㎡미만	85㎡이상
계		4	308	155	119	34
소형	아파트	미정	48	48	-	-
분양	아파트	미정	260	107	119	34

11.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(기부채납)에 관한사항

종 류	규 모(㎡)	시 행 자	비 고
도 로	558 (기부채납 16㎡ 포함)	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	

12. 의제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- 「주택법」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- 「건축법」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
13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92)에 비치 보관
끝.